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25.(수) 9:00 (2023. 10. 25.(수) 석간)

고용노동부,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

- '제20차 현장점검의 날' 운영,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-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10월 25일 '**현장점검의 날**'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*하는 **'추락(떨어짐)' 사고 예방에 집중**한다.

* 최근 5년간(2018년~2023년 6월)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비율: 39% (산재승인 기준)

추락 사고는 **비계, 지붕, 고소작업대, 사다리**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*하기 때문에 **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,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**하다. 구체적으로, **▲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, ▲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, ▲안전모 착용**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.

▲ 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(10.17.)
▲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떨어져 사망(10.7.)
▲ 오피스텔 제연덕트 재설치 공사 중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(10.6.)

이에 고용노동부는 **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**하는 한편,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**'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'를 발령**하여 **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**한다.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"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. **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**해달라."고 하면서

"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**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**하고, 필요하면 **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**할 수 있다. 또한, **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, 고용노동부에 신고**(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: 1588-3088)해달라."라고 덧붙였다.

붙임 1. 추락 사망사고 사례
2. 추락 사망사고 위기 경보
3.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
4. 산업현장 위험성평가, 이렇게 하세요!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기관 사무관 주무관	용윤서 (044-202-8902) 이철호 (044-202-8904) 정수빈 (044-202-890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추락 사망사고 사례

□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('22년)

○ (재해개요)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마감 작업을 하려던 재해자가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약 10m 높이의 천장을 보고 내려오던 중

- 고소작업대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기 전에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

○ (원인) 재해자는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작업이 가능한지만 살펴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

- 하지만 고소작업대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

⇨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,
아무리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

□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('22년)

○ (재해개요)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동식 사다리(2m)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재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함

○ (원인) 사다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

- 불가피하게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했고,

-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

⇨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,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라 하더라도
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음

□ **달비계 작업 중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다 떨어져 사망한 사례**

○ (재해개요) 공사현장 내 도장작업 과정에서 달비계 설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내 울타리 혹은 울타리 우측 지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60m 아래 1층으로 추락, 병원 치료 중 사망함

○ (원인) 옥상 단부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상 내 고정 울타리를 넘어가거나, 울타리 우측 지방을 타고 넘어가야 해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,

-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아, 옥상 내에서 안전대 체결 없이 이동함

⇨ 작업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함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,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도 활용할 필요

□ **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례('22년)**

○ (재해개요) 농장 축사 지붕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덧씌우기 작업 중,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2.6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

○ (원인)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,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,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음

⇨ 지붕 위에서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있어야 함

붙임2 추락 사망사고 위기 경보 발령

최근 지붕, 달비계, 창호작업 등에서 추락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사고 사례

- 10.17. 대전 소재 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
- 10.13.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창고 천장 판넬 시공 중 떨어져 사망
- 10.7. 경북 포항 소재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떨어져 사망
- 10.6.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제연덕트 재설치 공사 중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

'22년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 중 322명이 추락으로 사망

* 산재승인통계 기준

추락은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
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등
사업장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주요 작업별 추락방지조치

비계

-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
-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
- 추락방호망 설치

사다리

- 3.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
-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
- 2인 1조 작업
-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

지붕

-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
-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
-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

고소작업대

-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
- 전도방지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

*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

고용노동부

붙임3 | **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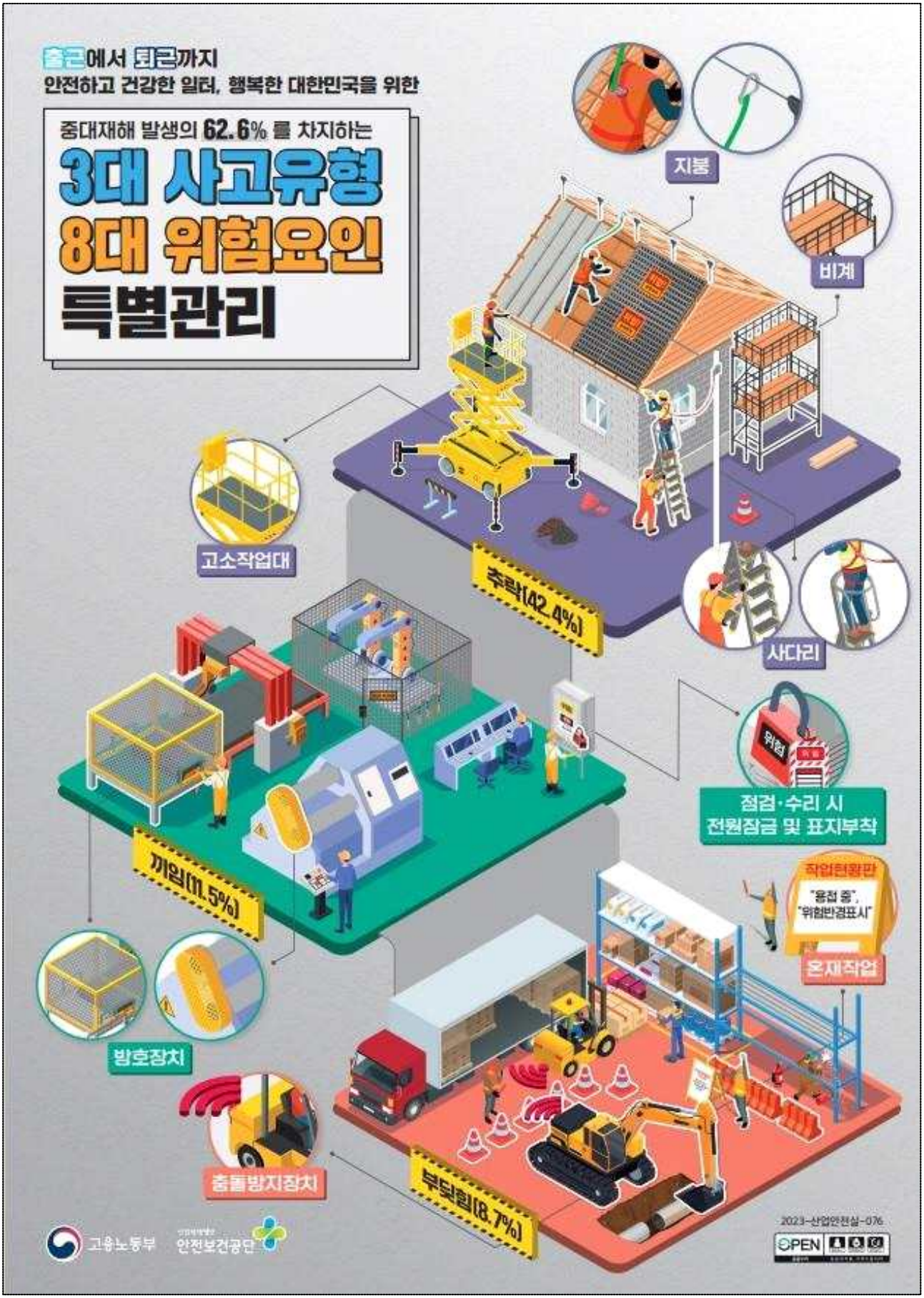

붙임4 **산업현장 위험성평가, 이렇게 하세요!**

산업현장 위험성평가, 이렇게 하세요!

위험을 알아야 **대책**을 마련하고 **안전**이 **확보**됩니다.

누가 하나요?

주도

사업주

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
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

참여

- 안전보건관계자
- 관리감독자(직장·조장·반장·팀장 등)
- 일반근로자
- 협력업체 관계자

언제 하나요?

① 최초평가

사업장 성립(또는 실착공) 후, 사업장 가동,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,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

② 정기평가

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

③ 수시평가

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

선택

새로운 평가 방식

②+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

② 상시평가 (월·주·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)

월(月)	1) 노사합동 순회점검 2) 아차사고 분석 3) 제안제도 실시 →	평가
주(週)	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→	이행확인 및 점검
일(日)	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→	공유

어떻게 하나요?

사전준비	유해·위험요인 파악	위험성 결정	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	공유·기록
• 실시규정 작성 • 담당자·참여자 선정 •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	• 노사합동 순회점검 • 아차사고 분석 • 제안제도 실시	•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	•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	• TBM,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